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 제도 신설〉

-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79, 2208580,
2208581, 2208582, 2208584, 2208586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개요	1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6.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II . 검토의견	8
1.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 규정 신설	8
2. 보훈급여금 담보 제공 허용	16
3. 보훈기금법의 대부금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대부금 추가	22
※ 참고자료	24

I. 개요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2. 28.
- 3) 회부일 : 2025. 3.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4 신설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0호) 및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2. 28.
- 3) 회부일 : 2025. 3.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2. 28.
- 3) 회부일 : 2025. 3.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수당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2. 28.
- 3) 회부일 : 2025. 3.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5. 2. 28.

3) 회부일 : 2025. 3.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6.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2인
- 2) 제안일 : 2025. 2. 28.
- 3) 회부일 : 2025. 3.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부금의 정의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추가하여 보훈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 규정 신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건의 개정안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제12조의4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4(주택대부 지원) ① 국 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에 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주택 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 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지원자금으로 한다. ③ 주택대부의 한도액·이율·상 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대부의 신청·담보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u>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u> <u>⑤ 제1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u>

- 현행 보훈 관계 법령상 대부 지원 제도는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각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이들과 일정 관계에 있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의 종류¹⁾는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로 구분하고, 대부금의 상환기간²⁾은 대부 종류별로 5년에서 20년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있으며, 이자율³⁾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보훈대상자 대부 지원 제도 현황>

구분	내용
목적	·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1명 또는 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5·18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1명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배우자
종류	· 농토구입대부 ·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 · 사업대부 · 생활안정대부
방식	· 위탁대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은행 재원으로 대부를 실시하고 이차보전 · 직접대부: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저신용자에 대해 보훈관서에서 대부 실시

자료: 국가보훈부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후 12년
 2. 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51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9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생략)

<보훈대상자 대부 한도액 및 상환조건(2025년 기준)>

구 분		한도액 (만원)	상환조건		담 보 조 건
			연이율 (%)	기 간	
주 택 대 부	아파트분양	3,000~ 6,000	3.0	20년균등	분양아파트(후취담보시 부동산· 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주택 구입 (신축)	3,000~ 6,000	3.0	20년균등	구입(신축) 주택
	주택 임차	2,000~ 5,200	3.0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보증보험
	주택 개량	800	4.0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자 영 사 업	농토 구입	3,000	3.0	3년거치 10년균등	구입 농토
	사업(창업)	2,000	4.0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보증보험
생 활 안 정		300~ 1,000	3.0	3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연대보증인 등 ※ 보철용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 (8백만원)

주) 아파트분양,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는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군 지역에 따라 한도액 차등 지원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현행 보훈대상자 대부 지원 제도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고 참전유공자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개정안은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에 있어서 참전유공자

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첫째, 개정안의 취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대부 지원의 종류 중 주택대부에 한하여 도입하려는 것으로 대부분의 참전유공자가 고령⁴⁾인 상황에서 노후 생활의 핵심적 요소인 주거 안정성만큼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⁵⁾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입법방안으로 보임.
- 둘째, 현행법의 주거안정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무주택 참전유공자에게 주택 우선 공급⁶⁾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대부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주거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⁷⁾.
- 셋째,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보훈 관계법령상 대부 지원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함께 특수임무유공자도 포함되는데, 특수임무유공자는 상이 여

4) '25년 6월 기준 6·25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93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79세임.

5) 제21대 국회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안정적 노후 주거생활을 위해 보훈복지타운 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52호)」,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임기만료폐기)이 발의된 바 있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거나 「주택도시금융법」에 따른 주택도시금융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와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주택 우선 공급 지원을 받는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주택 대부 지원 규정이 없음.

부에 관계없이 대부 지원 대상에 해당⁸⁾한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에게도 대부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주택대부를 실시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86억 9,600만원(연평균 17억 3,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보훈기금 운용의 부담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직접대부	632	1,142	1,032	933	843	4,582	916
위탁대부	192	539	853	1,137	1,393	4,114	823
합계	824	1,681	1,885	2,070	2,236	8,696	1,739

* 2026년은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제도 도입 첫해임을 고려하여 집행율 50% 적용

** 인원: 참전유공자 인원(25년 기준 112,794명)에 연평균증감률(△9.61%)과 국가유공자(70세 이상) 대부 지원율(직접 0.059% / 위탁 0.293%)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

*** 단가: 국가유공자 1인당 평균 대부단가(직접 21백만원 / 위탁 45백만원) 각각 적용

자료: 국가보훈부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과건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수정 사항 및 체계 자구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개정안은 주택대부의 한도액·이율·상환기간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부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은 대부금의 한도액과 상환기간에 대하여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다른 입법례와 같이 대부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그 범위를 최소한이라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주택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타대부 지원 대상자들과 같이 대부원리금을 보훈급여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제59조⁹⁾도 준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국가보훈부장관이 대부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¹⁰⁾과 직접대부의 위탁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부 업무를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¹¹⁾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상계)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賃借料)
3. 제61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10)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항에 5호의2를 신설하여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추가

11)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을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

○ 넷째,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¹²⁾의 대부를 받은 보훈대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¹³⁾의 제대군인으로서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각각 「참전유공자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 제도 도입에 찬성하지만, 재정 여건 및 채권보전¹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주택대부 목적(주택구입, 대지구입, 주택신축, 주택개량, 주택임차) 중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 구입 및 신축에 한정¹⁵⁾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¹⁶⁾.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대부 지원) ① ~ 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14) 담보 유형 중 부동산 담보 대부 시 채무자의 상환의지가 높고 실제 대부원리금 채납율도 가장 낮은 수준임.
< 담보별 수납률 현황 ('24.12월) >

(단위 : 백만원, %)

담보종류	부동산	보훈급여금	연대보증인
채납액	445	5,985	11,820
징수결정액* 대비 채납율	8.85	24.07	76.97

* '24.12.31.까지 징수결정된 대부원리금 중 '24년 1년 동안의 대부원리금 수납액 및 채납액의 합계

15) 대지구입대부도 부동산 담보 제공이 가능하나, 국가보훈부는 2005년 이후 수요가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신축대부에 포함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16) 주택구입 및 신축에 한정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68억 3,300만원(연평균 13억 6,700만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택대부 전체 지원 시보다 연평균 3억 7,200만원 적은 금액임.

2. 보훈급여금 담보 제공 허용(「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외 5개 법률안)

□ 6건의 개정안 중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5건의 개정안¹⁷⁾은 대부를 받을 경우 각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중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4건의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 제도 신설을 전제로, 각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을 참전유공자 주택대부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¹⁸⁾이고,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의2는 참전유공자가 이 법에 따른 주택대부 또는 타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대부(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권리의 보호) ① (생략) <u><신 설></u>	제6조의2(권리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u>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8) 참전유공자가 주택대부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 등과 경합되어 타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다면, 해당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임.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의4에 따른 주택대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에도----- ----- -----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권리의 보호)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제22조(권리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 ③·④ (현행과 같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7조의4(권리의 보호)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	제7조의4(권리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참전유

부(貸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의2(권리의 보호) ① ----- ----- ----- -----. ----- ----- ----- -----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9조(권리의 보호) ① (생략)	제19조(권리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 ----- ----- ----- -----제39조,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¹⁹⁾하고 있는데, 이는 보훈급여에 대한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지원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담보 제공을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각 법률의 “권리의 보호” 조항

허용하여, 주택마련, 농토구입 등을 위한 자금 마련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음.

현행법은 특정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타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대부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참전 유공자의 주택대부와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령상 대부의 담보로 제공 가능한 보훈급여금>

근거법률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4·19혁명공로수당 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금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자료: 각 보훈 관계법률 및 시행령

3. 보훈기금법의 대부금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대부금 추가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 제도 신설을 전제로, 해당 법률 제2조의 정의 규정 중 “대부금”에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대부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금(貸付金)”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말한다. 2. ~ 7. (생략)	제2조(정의) ----- -----. 1. ----- ----- ----- ----- ----- -----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및----- -----. 2. ~ 7. (현행과 같음)

□ 「보훈기금법」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지출 용도²⁰⁾ 중 하나로 “대부금”을 포함하고 있음.

□ 다른 대부 제도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지원을 위한 재원을 보훈기금에서 충당하려면 「보훈기금법」 제2조 정의 조항의 “대부금”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지원 규정 신설과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입법조치임.

문 의 처
02)6788-5107

20) 「보훈기금법」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
4. 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참 고

최근 3년 대부지원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27,261	211,460	29,919	231,751	28,872	194,303
		(100%)	(100%)	(100%)	(100%)	(100%)	(100%)
주택 대부	아파트분양	757	42,256	881	47,191	938	37,466
		(2.8%)	(20.0%)	(2.9%)	(20.4%)	(3.2%)	(19.3%)
	주택구입(신축)	648	34,713	754	42,271	755	34,918
		(2.4%)	(16.4%)	(2.5%)	(18.2%)	(2.6%)	(18.0%)
주택 대부	주택임차	1,118	32,989	1,026	28,965	815	21,443
		(4.1%)	(15.6%)	(3.4%)	(12.5%)	(2.8%)	(11.0%)
주택 대부	주택개량	113	851	120	882	83	604
		(0.4%)	(0.4%)	(0.4%)	(0.4%)	(0.3%)	(0.3%)
자영 사업	농토구입	70	1,805	50	1,334	30	801
		(0.3%)	(0.9%)	(0.2%)	(0.6%)	(0.1%)	(0.4%)
자영 사업	사업(창업)	1,489	26,393	1,759	30,829	1,271	21,556
		(5.5%)	(12.5%)	(5.9%)	(13.3%)	(4.4%)	(11.1%)
생활안정		23,066	72,453	25,329	80,279	24,980	77,515
		(84.6%)	(34.3%)	(84.7%)	(34.6%)	(86.5%)	(39.9%)

